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접·간접 노무비 등이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건설기술인 노무비 구분 계상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2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982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직접·간접 노무비 등이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건설기술인 노무비 구분 계상(안 제22조 후단 및 안 제22조의4 신설)	3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982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8.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금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직접·간접 노무비 등이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건설기술인 노무비 구분 계상(안 제22조 후단 및 안 제22조의4 신설)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생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이 경우 도급금액을 적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에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행법 제22조제2항¹⁾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제25조²⁾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사항으로 도급금액, 공사내용, 공사착수 및 공사완성의 시기 등과 함께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공사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공사원가계산을 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며,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³⁾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원가계산서 양식 】

공사명:		공사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자료: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22조제3항4)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⁵⁾는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계약금액 등과 함께 현행법 제88조제2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84조제1항⁶⁾에 따라 산출한 노무비를 기재하도록 하며, 붙임 서류로서 산출내역서를 명시하고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노무비¹⁾)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원정	
		() % 원정	
		() % 원정	

12. 지체상금율 :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이
의
의

수 급 인

주소

성명 (인)

※자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별표

*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기재 생략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도급금액 총액(노무비+재료비+경비 등) 범위 내에서 업체의 기술력·인력·장비 동원의 효율성 등에 따라 구분 없이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40조⁷⁾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7)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비용을 구분 없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또한 적정하게 반영·지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 비고 생략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22조의4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목별로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고려한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술인 노무비의 명시적 반영을 통해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공공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조달청의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⁹⁾에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

9)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2026.4.7.

- 관련 근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2026.4.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공사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구분 없이 총액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건설기술인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¹⁰⁾¹¹⁾

첨부: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
국가유산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

10)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안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접노무비 산정 방식에서 건설기술인 노무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기준의 마련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①‘비목별로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하여, 민간·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총액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는

11)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26.4.7. 공지, 2026.4.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율)	
		토목	건축
1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1	17.5
	7~12개월 (365일)	19.5	17.9
	13~36개월 (1095일)	19.8	18.2
	36개월 초과 (1096일)	21.0	19.4
10억 - 5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8.9	17.4
	7~12개월 (365일)	19.3	17.8
	13~36개월 (1095일)	19.6	18.1
	36개월 초과 (1096일)	20.8	19.2
50억 - 3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0	17.5
	7~12개월 (365일)	19.4	17.9
	13~36개월 (1095일)	19.7	18.2
	36개월 초과 (1096일)	20.9	19.4
300억 - 1,0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1	17.5
	7~12개월 (365일)	19.5	17.9
	13~36개월 (1095일)	19.8	18.2
	36개월 초과 (1096일)	21.0	19.4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8.9	17.4
	7~12개월 (365일)	19.3	17.8
	13~36개월 (1095일)	19.6	18.1
	36개월 초과 (1096일)	20.8	19.3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 의견 수렴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을 거쳐 정할 필요가 있고, ②‘건설기술인 노무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인의 특성별 노임단가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달청은 ‘건설기술인 노무비 별도 계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외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 필요한 모든 간접 노무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배치기준과 노임단가, 기타 현장사무원과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배치기준과 노임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므로, 모든 간접 노무인력에 대한 배치기준과 노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노임단가가 마련된 이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①‘비목별로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원수급인이 적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확보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별도 지급 구조를 형성하여 수급인의 금전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②‘건설기술인 노무비의 별도 계상’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가 기준 및 하수급인 배치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반영 없이는 해당 비용이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①‘비목별로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서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 비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고, 원수급인의 계약금액 증액 거부 또는 과소 측정 등 공사대금 감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②‘건설기술인 노무비 별도 계상’과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인바,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분쟁 예방,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①‘비목별로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도급금액에 적정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이후 추가 공사 시 공사금액 조정근거가 불명확해 해당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¹²⁾ ②‘건설기술인 노무비 별도 계상’과 관련해서는,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¹³⁾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서식이 없어 표준산출내역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서에 그 임금 등을 명시¹⁴⁾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며, 건설기술인 배치비용도 법정의무비용이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임금 등과 같이 노무비가 아닌 경비의 세부 항목¹⁵⁾으로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중 발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용 금 액			
항 목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15)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9조(경비)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

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591

-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